

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
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
심 사 보 고 서

2007. 4.27.

광진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
전 문 위 원

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 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525
----------	-----

2007. 4.27.
의 회 운 영 위 원 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7. 4.19. 김창현 의원외 2인
- 나. 회부일자 : 2007. 4.25.
- 다. 상정일자 : 제108회 광진구의회 임시회
제1차 의회운영위원회(2007. 4.25)

2. 제안설명

- 가. 제안설명자 : 김창현 의원

나. 개정이유

2000.7.1.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에 “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의 회기내에 실시한다.”라고 규정하고 있어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“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”에 규정된 행정사무감사의 시기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.

다. 주요내용

- “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중에 실시한다”라고 규정된 “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” 제2조 ②항의 내용을 “행정사무감사는 매년 1회에 한하여 정례회 기간중에 실시 한다”로 변경

3. 전문위원 검토의견

-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개정코자 하는 주요 내용은
- 조례 제2조 제2항의 “감사는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중”의 “제1차”를 “1회에 한하여”로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
 - 행정사무 감사 실시 시기를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 기간중으로 구분하는 것은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 정례회의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중복되지 않도록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 됨.

4. 관련법령

- 지방자치법 제36조(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) 제1항
-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 정례회의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(심의)

5. 질의 및 답변 요지

- 없음

6. 토 론

- 찬성토론 : 없음
- 반대토론 : 없음

7. 심사결과

- 재석위원 4인중 찬성 4인으로 원안가결

8. 기타 필요한 사항

- 없음